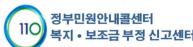




보도자료



국민권익위원회	■ 2016. 10. 28.(금) ■ 총 2쪽(붙임 별첨)				
국근한국귀한화	- 엠바고 없음				
홍보담당관실 (T) 044-200-7071~7073, 7078 (F) 044-200-7911	작성	청탁금지제도과 나성운 과 장 ☎ 044-200-7620 정윤정 서기관 ☎ 044-200-7622 박정구 사무관 ☎ 044-200-7621			

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Æ, 첫 회의 열어

공연·경기 등 취재목적 프레스티켓 허용 등 해석기준 제시

- □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/F는 10월 28일 권익위, 법무부, 법제처, 기재부, 문체부, 인사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.
- □ 이날 회의에서는 빈번히 제기되는 질의들 가운데 허용되는 행위임에도 법위반으로 잘못 알려진 사항들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발표함으로써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다.
 - 또한 기부행위, 언론인 취재지원,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할인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으며, 이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여 **정부의 입장**을 정리하였다.
 - ※ 붙임자료 참조

- □ 향후에도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/F는 정기적인 개최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해석기준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.
 - ※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청탁금지법상의 '직무관련자'에 대한 개념정의, 기업의 문화예술공연에 대한 지원,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등을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
- ※ (붙임) 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TF 회의 결과



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한 결과

2016. 10. 28.(금)

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/F

목 차

I. 음식물·선물·경조사비 관련 사항 ······ 1
1. 가액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식사 1
2. 가액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선물 3
3. 가액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경조사비 4
Ⅱ. 기부행위 관련 사항 5
1. 각종 바자회·성금 등 기부금품 모집 ······· 5
Ⅲ. 언론인의 취재지원 관련 사항 5
1. 기자실 제공 5
2. 프레스티켓 허용 여부6
3. 취재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 허용 여부 6
Ⅳ.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할인 관련 사항 7
1.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할인 프로그램 7
2. 단체 인솔자 무료입장7

I. 음식물, 선물, 경조사비 관련 사항

1 기액기준(3만원)을 초과할 수 있는 식사

□ 청탁금지법 비적용 대상자

○ 법 적용대상이 아닌 **민간인(이하 "민간인")간 식사**, 공직자등이 **민간인에게 제공하는 식사**는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

□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의 허용

- 민간인이 **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제공**하는 식사는 가액기준 (3만원)을 초과하여 허용
-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이 없는 **공직자등 끼리**하는 식사는 가액기 준을 초과하여 허용

□ 기타 청탁금지법상 허용

- **상급자가 하급자에게** 위로·격려·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식사 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(제1호)
-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**이사회가 끝난 후 내부 기준에 따라** 비상임이사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(제1호)
-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이·취임, 시무식·종무식 등의 경우에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(제8호의 사회상규)
- 경조사, 돌, 칠순잔치 등 기념일에 공직자등 **하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**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(제8호의 사회상규)

□ 각자 내기일 경우의 허용

- 각자내기(더치페이)
 - 직무관련자와 같이 식사를 한 후 **각자 계산**하는 것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허용
 - 직무관련이 있는 어느 일방이 1차를 내고 바로 이어진 2차에서 다른 상대방이 같은 수준으로 낸 경우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
- 3만원 초과분 각자내기
 - 직무관련자와 같이 식사를 한 후 **가액기준을 초과한 부분**에 대해 **각자 계산하는 것은 허용**

※ 참고: 가액기준(3만원) 이하 식사 가능 여부에 대한 다수 질의 사항

-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이 있는 **하급자가 상급자에게** 제공하는 식사는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으로 하는 경우 3만원 이내 허용
- **공직자등과 직무관련이 있는 언론인 사이**의 식사는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 의례 목적으로 하는 경우 3만원 이내 허용

가액기준(5만원)을 초과할 수 있는 선물

□ 청탁금지법 비적용 대상자

2

○ **민간인 사이**의 선물, 공직자등이 **민간인에게 제공하는 선물**은 청탁 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

□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의 허용

- 직무관련이 없는 **공공기관 내 공직자등 사이**의 선물은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
- 직무관련이 없는 **공공기관장 사이**에 주고받는 선물은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

□ 기타 청탁금지법상 허용

- 경조사 등 기념일에 **참석한 하객**인 공직자등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또는 주례를 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100만원 이하의 답례품
- 은행, 증권사 등 금융기관, 백화점, 마트 등에서 **거래실적에 따라**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
-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**재직 중인 회사로부터**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 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는 경우

가액기준(10만원)을 초과할 수 있는 경조비

□ 청탁금지법 비적용 대상자

○ 민간인 사이의 경조사비,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경조 사비는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

□ 직무관련이 없는 경우의 허용

○ 공공기관 내부 **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**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가 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

□ 기타 청탁금지법상 허용

- **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** 또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위로·격려 등의 목적으로 **상급자가 하급자에게** 제공하는 경조사비(제1호)
- 친족이 제공하는 경조사비(제4호)
- 직원상조회·동호인회·동창회·사회단체 등이 **정하는 기준에 따라**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(제5호)
-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**재직 중인 회사로부터**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 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를 받는 경우(제8호)

※ 참고: 공공기관 내부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

- 근무평정, 승진심사 등 인사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시기에도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가액기준 내에서 허용
- **상호부조**의 성격이 강하고 **전통적인 미풍양속**이라는 점, 인위적으로 **경조사의 시기**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

Ⅱ. 기부행위 관련 사항

□ 각종 바자회 · 성금 등 기부금품 모집

자선바자회, 불우이웃 성금, 재해구호금 모금 등을 할 수 있나요?

○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, 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」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당연히 허용됩니다.

Ⅲ. 언론인의 취재지원 관련 사항

□ 기자실 제공

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출입기자에게 기자실을 제공할 수 있나요?

-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출입기자에게 **합리적인 사유와 자체 기준 으로** 기자실 제공을 하였다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.
 - 출입기자단이 기자실을 제공받은 후 자율적으로 기자실의 좌석을 고정석으로 운영하는 것은 무방함

□ 프레스티켓 허용 여부

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은 허용되 나요?

- 문화·예술·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프레스티켓을 제공받아 공연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입니다.
- 따라서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**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**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(다만, 양도·대여 불가).

□ 취재를 위한 교통편의 • 식사 제공 허용 여부

공식적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행사 관련 임직원에게 교통편의· 식사를 제공해도 되나요?

- **공식적인 행사**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 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.
 - 따라서 공식적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행사 관련 임직원에게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원활한 행사진행 지원과 행사 홍보를 위한 취재 지원을 위해 교통편의·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.
 - 그런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일률적 제공에 해당되지 않으나, 참석자 중 역할별로 합리적으로 차등 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

Ⅳ.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할인 관련 사항

□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할인 프로그램

군인, 공무원, 교사, 언론인 등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프로그램은 허용되나요?

○ 기업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.

□ 단체 인솔자 무료입장

현장학습,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시설에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를 무료로 입장시키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?

○ **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**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**지도·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**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.







국민권익위원회	• 2016. 11. 7.(월) • 총 1쪽(붙임 별도)				
ACCATICA	•엠바고 없음				
		청탁금지제도 과			
홍보담당관실 (T) 044 000 7071 7070 7070	작성	나성운 과 장 ☎ 044-200-7620			
(T) 044-200-7071~7073, 7078		정윤정 서기관 ☎ 044-200-7622			
(F) 044-200-7911		박정구 사무관 🕾 044-200-7621			

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/F 2차 회의 결과 발표

언론중재위원회 민간위원 법 적용대상

관계부	나처 힘	합동	해석	지원	T/F	- 11월	4일(금)	권익위,	법무부,	법제
처, 기	재부,	문체	세부,	인사	처가	참여한	가운데	제2차	T/F회의·	를 개
최하였	(다.									

- □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와 최근 입시철이 다가옴에 따라 입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질의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.
 - ※ 붙임자료 참조
- □ 제3차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/F회의는 11. 11.(금) 개최되며, 외부강의등 사례금 관련 쟁점에 대한 해석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.
- ※ (붙임)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TF 회의(제2회) 결과

< 붙임 >

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TF 회의(제2회) 결과

1 입시, 취업추천 관련 질의사항

□ 수능시험 떡 등 제공

선배 또는 선생님이 학생(후배)에게 수능시험을 잘 보라고 주는 떡 등이 허용되나요?

○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 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.

□ 학부모 단체의 간식 제공

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수능을 앞두고 고3 학생들을 격려 하고자 간식을 고3 학생 전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요?

○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 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.

□ 수능 격려 플래카드 부착

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고3 학생들의 수능시험을 격려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것이 법 위반인가요?

○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이 아닙니다.

□ 대학 입시 설명회 시 식사제공

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에 인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선생님을 초청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요?

-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 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가 **공식적 행사**에 해당할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허용됩니다. 다만,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허용됩니다.

□ 대학교수의 취업 추천

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할 경우 청탁금 지법에 위반되나요?

○ 민간 기업 관계자는 **공직자등이 아니므로** 대학 교수가 **민간기업** 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.

2

공무수행사인 관련

□ 언론중재위원회 민간위원

언론중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?

○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된 언론중재 위원회는 심의·의결 등을 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이므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언론중재위원 회의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등 수행 업무의 성격이 공무로 판단됩니다.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.

□ 각종 협회

한국주택협회,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, 대한민국학술원 등 각종 협회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?

○ 개별 법령에서 위 협회들에게 권한·업무를 위임·위탁하고 있으므로 위 협회들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.

□ 평창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민간위원

평창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?

○ 「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설치된 조직위원회는 그 **법적 성질이 합의제 기관이 아닌 법인**이므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볼 수 없습니다. 따라서 평창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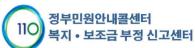
※ 청탁금지법

- 제11조(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"공무수행사인"이라 한다)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.
 - 1.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 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



보도자료



국민권익위원회	■ 2016. 11. 14.(월) ■ 총 2쪽(붙임 별도)				
	- 엠바고 없음				
홍보담당관실 (T) 044-200-7071~7073, 7078 (F) 044-200-7911	작성	청탁금지제도과 나성운 과 장 ☎ 044-200-7620 주경희 서기관 ☎ 044-200-7705			
		박정구 사무관 🕾 044-200-7621			

공직자등의 연주·전시, 방송사 아나운서 행사 진행 등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아

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/F 3차 회의 결과 발표

관계부	부처	합동	해석지	원	T/F는	11월	11	일(금)	권익위,	법무부,	법
제처,	フ]ス	내부,	문체부,	인	사처가	참여	한	가운데	∥ 제3차	T/F회의]를
개최ㅎ	ㅏ였 디	7.									

- □ 이날 회의에서는 △공직자등의 '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' 경우일 것, △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·강연·기고 등, 즉 '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·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'일 것을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의 판단기준으로 보았다.
- □ 또한, 각종 행사·회의 진행이나 사회, 연주·공연·전시, 법령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회의 참석, 시험출제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,

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 제한이 있는지 등 외부강의등과 관련한 다수 질의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.

- □ 제4차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/F회의는 11. 18.(금) 에 열릴 예정이다.
- ※ (붙임)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TF 회의(제3회) 결과

< 붙임 >

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TF 회의(제3회) 결과

□ 연주·공연·전시

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·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 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나요?

○ 연주회·전시회에서의 연주·공연·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, 의견· 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 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□ 각종 행사 진행

방송사 아나운서가 행사비를 받고 지역 축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?

○ 방송사 아나운서가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·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 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□ 각종 회의 진행

공청회,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?

○ 공청회,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·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이거나 의견·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.

□ 법령상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

법령(조례·규칙을 포함)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?

○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·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□ 시험출제

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?

○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,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·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·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.

□ 동영상 강의

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?

○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 으로 의견·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.

□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원고 작성

방송사가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문화재 전문가인 교수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등인가요?

○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관련 원고작성은 신문·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.

□ 외부강의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

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?

-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며, 법 제10조에서는 외부 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.
 - 다만,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□ 외부강의 사례금 외 식비, 숙박비, 교통비 제공

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식비, 숙박비,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나요?

○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, 숙박비,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,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□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관련

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내용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사상·신념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프라이버시권,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?

-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 등 수수를 차단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 공기관에 대한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기본 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





보도자료



국민권익위원회	- 2016.	11. 21.(월) • 총 3쪽(붙임 1쪽 포함)			
466411641	- 엠바고 없음				
홍보담당관실 (T) 044-200-7071~7073, 7078 (F) 044-200-7911	작성	청탁금지제도과 나성운 과 장 ☎ 044-200-7620 주경희 서기관 ☎ 044-200-7705 박정구 사무관 ☎ 044-200-7621			

"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, 금품등 제공자와의 관계, 수수 경위·시기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"

제4차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TF 회의 결과 발표

관계부치	네 합동	해석지원	T/F는 1	l1월 18	일(금)	권익위,	법무부,	법제처,
문체부,	인사처	가 참여한	가운데	제4차	T/F회	의를 개	최하였다	

- □ 이날 회의에서는 △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해석, △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,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선물·경조사비의 요건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.
- □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'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'를 의미하고, 여기에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·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으며,

-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,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,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,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, 이를 기준으로 직무관련성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은 소관 공공기관(청탁방지담당관) 별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직무관련성은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·축적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았다.
- □ 또한, 3만원·5만원·10만원 이내의 음식물, 선물, 경조사비라고 하여 언제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.
 -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는 '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 의례, 부조'의 목적 요건이 인정되어야 적용되는 것이므로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3만원·5만원·10만원 이내의 음식물, 선물, 경 조사비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고 보았다.
 - 그리고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,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, 수수 경위와 시기, 직무관련성의 정도,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.
- □ 그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빈발하거나 중복된 질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도 논의하였고, 제5차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/F회의는 11. 25.(금)에 열릴 예정이다.

※ (붙임) 제4차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TF 회의 관련 FAQ

다수 질의 사항 관련 FAQ

□ 달력, 수건, 생수 등 기념품·홍보용품 단순 전달 행위

교사, 공공기관장 등의 공직자등이 다수인(학생, 소속직원 등)에게 단순히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달력, 수건, 생수 등 기념품·홍 보용품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?

○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제작된 기념품·홍보용품을 공 직자등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전달의 편의를 위해 전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,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.

□ 언론사 공동주최 공연 티켓 판매

언론사가 업체와 공동으로 공연을 주최하면서 해당 공연 티켓을 판매 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?

○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고 공연 티켓의 시가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됩니다.

□ 공공기관 유료 발간물 무료제공

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공공기관의 백서 등 발간물을 유관기관 (공직자등 개인 제외)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?

○ 공공기관 백서 등 유료 발간물은 비록 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경우라도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홍보를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를 유관기관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청 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.





^{™™} 보도참고자료



(청탁금지제도과, '16.10.27.)

□ 기사 내용(10.26.자 문화일보)

"제자 취업추천도 위법" … 대학가 청탁금지법 패닉

- ◆ 취업시즌이 다가오고 있지만 교수가 우수 제자를 기업체에 추천 하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돼 졸업생들의 유용한 취업 루트가 봉쇄될 상황이다.
- ◆ 기업 공채와 함께 대학의 주요 취업 루트의 하나인 교수들의 취업 추천 활동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. 교수들이 친분이 있는 기업 관계자에게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할 경우 청탁 유형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, '제3자 청탁'에 해당돼 법 위반이 된다.

□ 국민권익위원회 입장

- 대학 교수가 **민간기업**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경우 민간 기업 관계자는 **공직자등이 아니므로**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아님
- 또한, 대학 교수가 공공기관에 '해당 기관의 규정 등에 따른' 공식적인 방법으로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 청탁에 해당되지 않음
 - ※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관하여 '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'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됨







□ 기사 내용(10.20.자 한국경제)

교수들 "결혼식 주례 어쩌나"

◆ 연세대 A교수는 이달 말 자신이 가르친 대학원생의 결혼식 주 례를 맡기로 했다가 고민에 빠졌다. 청탁금지법에 따라 외부강 연에 나가는 것처럼 대학본부에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려서다. 사례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모호하다. 그는 '신고하는 게 좋다'는 학교 측의 조언에 따랐다.

□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

-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규율되는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· 강연·기고 등을 말함
- 결혼식 주례는 직무관련성이 없고 사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것이 므로 외부강의등으로 볼 수 없음
- 또한, 결혼식 주례 사례금은 **결혼식 진행에 대한 감사의 표시**이고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됨

□ 기사 내용[10.20.자 연합뉴스]

- ◆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은 최근 교문위 소속 의원 등을 초청해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 중인 가무극 '잃어버린 얼굴 1895'를 관람할 계획이었다.
 -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결과, 티켓을 일괄 구매해 공짜로 주는 것은 동료 의원이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는 답변을 들었다.
- ◆ 권익위 관계자는 "국회의원과 언론사 기자는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이 식사나 티켓비용 등을 제공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"고 밝혔다.

□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

- **동료 국회의원 사이**에는 특별한 이해관계 없는 한 **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** 가액기준(5만원)을 초과하는 선물 제공이 가능함
- 국회의원과 정치부(국회 출입 등) 기자 등 직무관련이 있는 언론인 사이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또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
 - 다만, 기사를 청탁하는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하의 식사나 선물도 제공할 수 없음